

의안번호	제466호
의결 연월일	2013년 월 일 (제319회)

**충청북도 의용소방대 자녀장학금 지급조례
일부개정조례안**

발의자	박문희 의원 외 6명
발의연월일	2013년 4월 2일

충청북도 의용소방대 자녀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박문희 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466
----------	-----

발의연월일 : 2013년 4월 2일
발 의 자 : 박문희·이광진·김종필
강현삼·김영주·김재종
임헌경 의원(7명)

1. 개정이유

- 의용소방대원의 자녀 중 장학생을 선발함에 있어 타기관의 장학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도 등록금 총액범위 내에서 장학금을 지급하도록 관련 규정을 완화하고,
- 군입대, 질병 등의 치료를 위한 휴학의 경우는 장학금 지급정지 사유에서 제외토록 하여, 의용소방대원의 복리증진 및 사기를 함양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장학생의 선발기준 완화 (안 제4조)
- 장학금 지급정지 사유 중 단서조항 신설 (안 제8조)

3. 조 례 안 : 붙임

4. 신·구조문대비표 : 붙임

5. 관 계 법 규 : 해당없음

6. 비 용 추 계 서 : 해당없음

7. 관 련 부 서 협 의 : 소방본부 대응구조구급과와 협의

8. 입 법 예 고 결 과 : 의견 없음 (13. 3. 12. ~ 4. 1.)

충청북도 의용소방대 자녀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충청북도 의용소방대 자녀장학금 지급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제1항제7호 중 “기타”를 “그 밖의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② 제1항에 따라 장학생을 선발함에 있어서는 지역 간의 균형을 고려하여야 하며, 타 분야 장학금을 지급받는 때에도 등록금 전액규모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선발할 수 있으며, 고등학생은 3년 이내, 대학생은 4년 이내에 이 조례에 따라 장학금을 지급받은 사람은 제외한다. 다만, 지급 대상자가 없을 경우 본문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.

제5조제2항 중 “범위내에서”를 “범위에서”로 한다.

제7조제2항 중 “개시후 2월이내”를 “시작 후 2개월 이내”로, 같은 조 제3항 중 “의한”을 “따른”으로 한다.

제8조제1항제2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다만, 학기 중 군입대 또는 부상, 질병 등의 치료를 위한 휴학의 경우, 해당 학기는 지급정지사유에서 제외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현 행	개 정 안
<p>제8조(지급의 정지) ① (생 략)</p> <p>1. (생 략)</p> <p>2. -----</p> <p>----- <단서 신설></p> <p>3. ~ 4. (생 략)</p> <p>② (생 략)</p>	<p>제8조(지급의 정지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1. (현행과 같음)</p> <p>2. -----</p> <p>-----, 다만, 학기 중 군입대 또는 부상, 질병 등의 치료를 위한 휴학의 경우, 해당 학기는 지급정지사유에서 제외한다.</p> <p>3. ~ 4.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

참 고 자 료

□ 한국장학재단 “장학금 이중(중복)지원 가능여부에 대한 회신”

- 국가장학금(I, II유형) 업무처리기준에서는 이중지원 범위에 있어, 등록금 전액 규모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타 장학금과 중복 수혜가 가능함